

대통령령 제18817호

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

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.

대 통 령 노 무 현 인

2005년 4월 30일

국무총리 이 해 찬
국무위원
재정경제부 한덕수
장 관

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
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
한규정”을 관세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할당관세의 적
용에 관한 규정”으로 한다.

제1조중 “관세법”을 “『관세법』”으로 한다.

대통령령 제18382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
관세의적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조(대통령령
제18575호 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
용에관한규정중개정령에 의하여 개정된 것을 말한
다)중 “2005년 4월 30일”을 “2005년 12월 31일”로
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◇관세법제71조의규정에의한할당관세의적용에관한
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『관세법』 제71조의 규정에 의하면 물가안정 및 국내
산업의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
정한 수량의 범위를 정하여 기본세율에서 100분의
40의 범위안의 율을 감하여 관세율을 조정할 수 있
는 할당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바,
원유 등 석유류의 가격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야기되
는 물가불안을 해소하고 국내기업의 원가부담을 완
화하기 위하여 원유·휘발유·등유·경유·중유 등
에 대한 할당관세의 적용기간을 2005년 12월 31일
까지 연장하려는 것임.☺

〈법제처 제공〉